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8. 10 선고 2020가단14484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6. 8.

판 결 선 고 2021. 8. 10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6,846,731원 및 그중 3,973,481원에 대하여 2020. 7. 30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9 지분에 관하여 2019. 6. 10.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,846,731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.
- 나. 피고 C은 원고에게 6,846,7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피고 B,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 및 자백간주 판결(피고 C,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이재은

별지